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111호, 2024. 1.23. 공포, 2025.1.24. 시행)됨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한국수어통역사 등의 지원은 장애유형, 장애정도, 주된 의사소통 방법 및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(안 제22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의2에 따라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때,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유형, 장애정도, 주된 의사소통 방법 및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행하되, 수어통역센터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2조의2(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)</u> ①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의2에 따라 청각장애인이거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때,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유형, 장애정도, 주된 의사소통 방법 및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지원은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행하되, 수어통역센터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③ <u>그 밖의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183